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7. 17.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
나. 회부일자 : 1998. 8. 6.

다. 상정일자 : 1998. 8. 12 제5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2차 본회의

## 2. 제 안 이 유

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추가 삽입하려는 것임.

## 3. 주 요 내 용

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 등록 및 공포,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임.

## 4. 검 토 의 견

-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평창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삽입하는 것임.
-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